
질병관리청 민원편람

2024.11.



질병관리청

민원편람 이용안내

이 편람은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민원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관계규정과 이 편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소득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
2. 소득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6
3. 예방접종증명 -----	8
4.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제비) 신청 -----	9
5.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	11

6.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	14
-------------------------	----

7.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	18
8.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	21
9.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	24

10. 유흥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 -----	26
--------------------------	----

11.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	27
12.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	35
13.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신청 -----	38

14. 검체시험의뢰 -----	41
------------------	----

민원명	1.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소관부서	감염병정책과
내용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민원인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 (1) [별지제24호] 소독업 신고서 (2)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2. 소독업 변경신고 (1) [별지제26호]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접수처	시,군,구	처리부서	시,군,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확인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소독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명칭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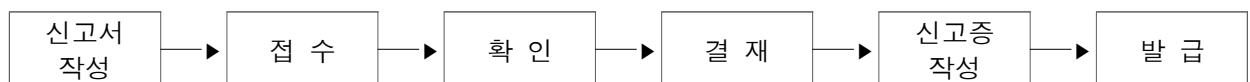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 사유	[]소재지 []명칭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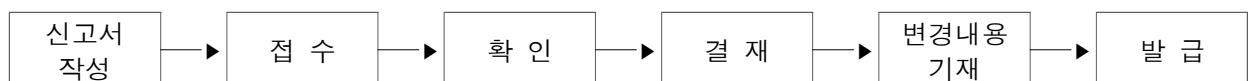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민원명	2.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소관부서	감염병정책과
내용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27조] 소독업의(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2. 소독업 신고증 원본			
처리절차	접수처	보건소 시,군,구	처리부서	보건소 시,군,구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참고사항				

[] 휴 업
소독업의 [] 폐 업 신고서
[] 재개업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소재지

휴업·폐업·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	--------------	---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신고증 분실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	------------	-----------

참고 및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합니다).
-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독업 신고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적으면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 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원명	3. 예방접종증명			소관부서	예방접종관리과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신분증				
처리절차	접수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민원명	4.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장제비) 신청		소관부서	예방접종정책과
내용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1) [별지제34호]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2) 사망진단서 (3) 부검소견서 (4)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1) [별지제34호]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3)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120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심의 → 보상금 산정 → 결정 → 지급		
참고사항				

[]사망 []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망자 또는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사망자 또는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일시	
	접종 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및 장제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및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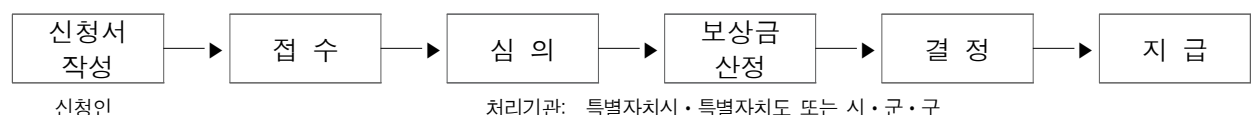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민원명	5.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소관부서	예방접종정책과
내용	예방접종을 받은자가 이상반응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1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32호]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별지제33호] 진료확인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접수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120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심의 → 보상금 산정 → 결정 → 지급		
참고사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장소	접종 일시	
진료비	간병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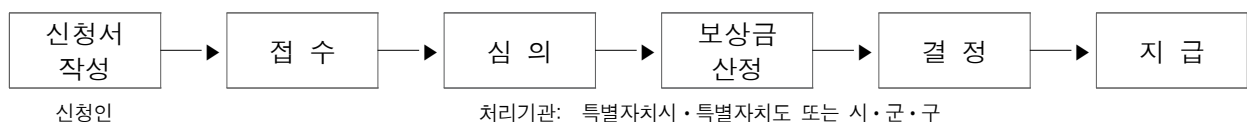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 료 확 인 서

진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질병명 또는 주요 소견				
진료일수	외래	일		
	입원	일		
의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의료보험 비급여액
위와 같이 진료하였음을 확인함. 의료기관의 명칭 소 재 지 개설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원명	6.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소관부서	결핵정책과
내용	입원명령(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명령기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입원명령 해제 후(군 읍면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1. 「결핵예방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2.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민원인 구비서류	1. 입원비 지원의 경우 (1) 입원비 지원신청서 (2)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3)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 (4) 입원통장사본(환자 및 보호자 명의) 2.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의 경우 (1)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2) 입원통장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3)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소득조사 관련 서류			
처리절차	접수처	보건소 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처리부서	보건소 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입원비 지원신청서 [환자용]									
☐ 신규 ☐ 기존									
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 (☐ 남 ☐ 여)			
					연락처	Tel : _____ H.P : _____			
	주 소								
	이메일				정보수신여부	☐ 이메일 ☐ 휴대폰 ☐ 수신거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_____ (☐ 남 ☐ 여)			
	관 계				연락처				
의료 보장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2종/ ☐ 특례종/ ☐ 차상위중) ☐ 해당없음								
	☐ 건강보험가입 자		종별	☐ 직장 ☐ 지역					
후원금	긴급의료비 등 국가지원여부	☐ 없음 ☐ 있음(기관 : _____, 금액 : _____)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내용 : _____, 금액 : _____)							
	환급금 수령여부	☐ 없음 ☐ 있음(진료기간 : _____, 금액 : _____)							
환급·환수 안내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_____ (서명)			
입원기간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입원기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현재신청 입원비	총입원비(A+B+C)								
	지원금 총액 (A1+C1-후원금)		급여분 진료비				비급여분 진료비(C)		
			법정본인부담금(A)		공단부담금 (B)		지원(C1)	비지원(C2)	
			지원(A1)	비지원(A2)					
위와 같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보건소장 귀하				
처리 절차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입원비 지급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결핵균검사 결과지 : 환자가 제출하지 않고 보건소담당자가 전산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 시) 4. 환자입금통장사본					1. 주민등록등(초)본 ※ 해당 서류는 민원24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1) 해당자에 한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 접수 → 소득조사 → 검토 →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결정 → 통보	
작성 요령	< 환자가구 > 1.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 - 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과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 하고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2. 환자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있는 자(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환자가구에 포함) -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신청인 제출서류	1.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2. 입금통장사본 1부 3. 소득조사 관련 서류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재적등본 제출)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	1.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제출) 2. 주민등록등(초)본 3. 사업자등록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회사퇴직자 등 근로소득자인 경우) ※ 신청인의 제출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민원24의 공적자료 이용)를 통해 신청인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함
유의 사항	1.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및 환자가구의 소득 현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원명	7.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소관부서	검역정책과
내용	선박위생검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검역소장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검역법」 제27조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22호] 신청서 2. [별지제23호] 신청서 부표 3. 기존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			
처리절차	접수처	국립검역소	처리부서	국립검역소
	처리기간	2일 (단, 공휴일과 토요일 미산입)	수수료	1. 발급수수료: 1,000원 2.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선박 톤수별) (1) 선박 500톤 이하 : 20,000원 (2) 선박 500톤 ~ 1,000톤 : 30,000원 (3) 선박 1,000톤 초과 ~ 10,000톤 : 50,000원 (4) 선박 10,000톤 초과 ~ 20,000톤 : 70,000원 (5) 선박 20,000톤 초과 : 100,000원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검사 실시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신청 → 접수 → 위생검사 → 발급		
참고사항				

신청서 APPLICATION

※ 수입인지를 뒷면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직업 Occupation			
	주소 Present Address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 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비고 Remarks
항공기 등록번호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항공기명 Type of Aircraft		국적 Nationality		항공 회사명 Owner or Operator	
검사 대상자 성명 Name of Person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목적 Purpose	
열차·자동차명 Train/Car		열차·자동 차의 형 Type of Train/Car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화물명 또는 장소명 Article or Place		수량 및 용적 Quantity and Volume		화물주 또는 소유자 Owner		목적 또는 생산지 Purpose or Remark	

「검역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 실시와 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execution of and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with regard to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	선박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sheet(vol.23) if it's ship
----------------------------	---

신청서 부표 Annex to Application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 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주 또는 대리점 Ship Owner or Agent					
선박위생 증명서 Ship sanitation certificate	구분 Type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음 Do not have certificate	발급일 Date		발급기관 port

구분 Type	용적 또는 면적(m ³ /m ²) Space (Sub M, SqM)	기타 etc.	비고(참고) Reference	
조리실 Galley			건조년 및 장소 Year built & place	
식료품 저장실 Pantry			최종 출항지 및 출항일 Last foreign port & date of departure	
창고 Stores			입항일(일시) Date of entry	
선창 Hold(s)			입항 시의 화물상태 Cargo situation	
화물 Cargo				
선실 Quarters				
- 선원실 Crew				
- 사관선실 Officers				
- 객실 Passengers			선박 정박 예정지 현황 Present condition of expected place for anchoring ships	
- 갑판 Deck			순서 Order	정박지 및 부두명 An anchorage and the name of dock
먹는물 Potable water				일시 Date
하수 Sewage			1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2	
고형폐기물 Solid waste			3	
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4	
고인 물 Standing water			5	
엔진실 Engine room			출항 예정 일시 : Date of expected departure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기타 Other areas specified	* 자료 첨부 attachment related data			

*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년(yy) 월(mm) 일(dd)

선장 또는 회사 (대리점)

서명
Signature _____ 회사 인
Master or authorized agent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원명	8.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소관부서	검역정책과
내용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 승객·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등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에 해당 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국립검역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검역법」 제28조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22호] 신청서 2. 선박의 경우, [별지제23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			
처리절차	접수처	국립검역소	처리부서	국립검역소
	처리기간	-	수수료	1. 발급수수료: 1,000원 2. 소독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신청서 APPLICATION

※ 수입인지를 뒷면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직업 Occupation			
	주소 Present Address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 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비고 Remarks
항공기 등록번호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항공기명 Type of Aircraft		국적 Nationality		항공 회사명 Owner or Operator	
검사 대상자 성명 Name of Person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목적 Purpose	
열차·자동차명 Train/Car		열차·자동 차의 형 Type of Train/Car		국적 Nationality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화물명 또는 장소명 Article or Place		수량 및 용적 Quantity and Volume		화물주 또는 소유자 Owner		목적 또는 생산지 Purpose or Remark	

「검역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 실시와 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execution of and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with regard to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7 and 28 of the Quarantine Act.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첨부서류 Required documents	선박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sheet(vol.23) if it's ship
----------------------------	---

신청서 부표 Annex to Application

선박명 Name of vessel		선박 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적 Nationality	
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선적항 Port of registry	
선주 또는 대리점 Ship Owner or Agent					
선박위생 증명서 Ship sanitation certificate	구분 Type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음 Do not have certificate		발급일 Date	발급기관 port

구분 Type	용적 또는 면적(m ³ /m ²) Space (Sub M, SqM)	기타 etc.	비고(참고) Reference	
조리실 Galley			건조년 및 장소 Year built & place	
식료품 저장실 Pantry			최종 출항지 및 출항일 Last foreign port & date of departure	
창고 Stores			입항일(일시) Date of entry	
선창 Hold(s)			입항 시의 화물상태 Cargo situation	
화물 Cargo				
선실 Quarters				
- 선원실 Crew				
- 사관선실 Officers				
- 객실 Passengers				
- 갑판 Deck				
먹는물 Potable water			선박 정박 예정지 현황 Present condition of expected place for anchoring ships	
하수 Sewage			순서 Order	정박지 및 부두명 An anchorage and the name of dock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1	일시 Date
고형폐기물 Solid waste			2	
의료폐기물 Medical waste			3	
고인 물 Standing water			4	
엔진실 Engine room			5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출항 예정 일시 : Date of expected departure	
기타 Other areas specified	* 자료 첨부 attachment related data			

* 열거된 구분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십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년(yy) 월(mm) 일(dd)

선장 또는 회사 (대리점)

서명
Signature _____ 회사 인
Master or authorized agent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원명	9.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소관부서	검역정책과
내용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이전에 국제공인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인적사항 변경, 증명서 분실·훼손, 예방접종 유효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검역법」 제28조의2 2.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31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절차	접수처	국립검역소	처리부서	국립검역소	
	처리기간	-	수수료	증명서교부 1,000원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증명서 번호 certificate number	처리기간 Period of processing	즉시 Immediately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구분			
[] 황열 Yellow Fever [] 콜레라 Cholera [] 증명서 Certificate			
신청인 Application	성명 Full Name 한글(Kor.)		영문(Eng.)
	주민등록번호 ID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전화 Tel.		성별 Sex
	주소 Present Address		
	국적 Nationality		여행지 Destination
	여행 목적 Purpose of Visit		
	전 발급 장소 Former Issued Office		전 발급연월일 Former Issued Date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검역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am applying for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2 of the Quarantine Act.

접수 날짜도장	
------------	--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tion

(서명 또는 지장)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

Director of the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민원명	10. 유흥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		소관부서	에이즈관리과
내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종사자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절차	접수처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부과 가능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민원명	11.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소관부서	의료방사선 건강관리과
내용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으로 등록(변경) 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1) [별지제8호] 대표자 서약서 (2)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3)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4)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 보유목록 1부 (5)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 (6) [별지제9호] 인력 현황 1부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8)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2. 등록신청의 경우 (1)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검사기관) (2)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검사기관) (3)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피폭방사선량관독업무자등록증 1부(측정기관) (4)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측정기관) 3.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1) 등록증 원본 (2)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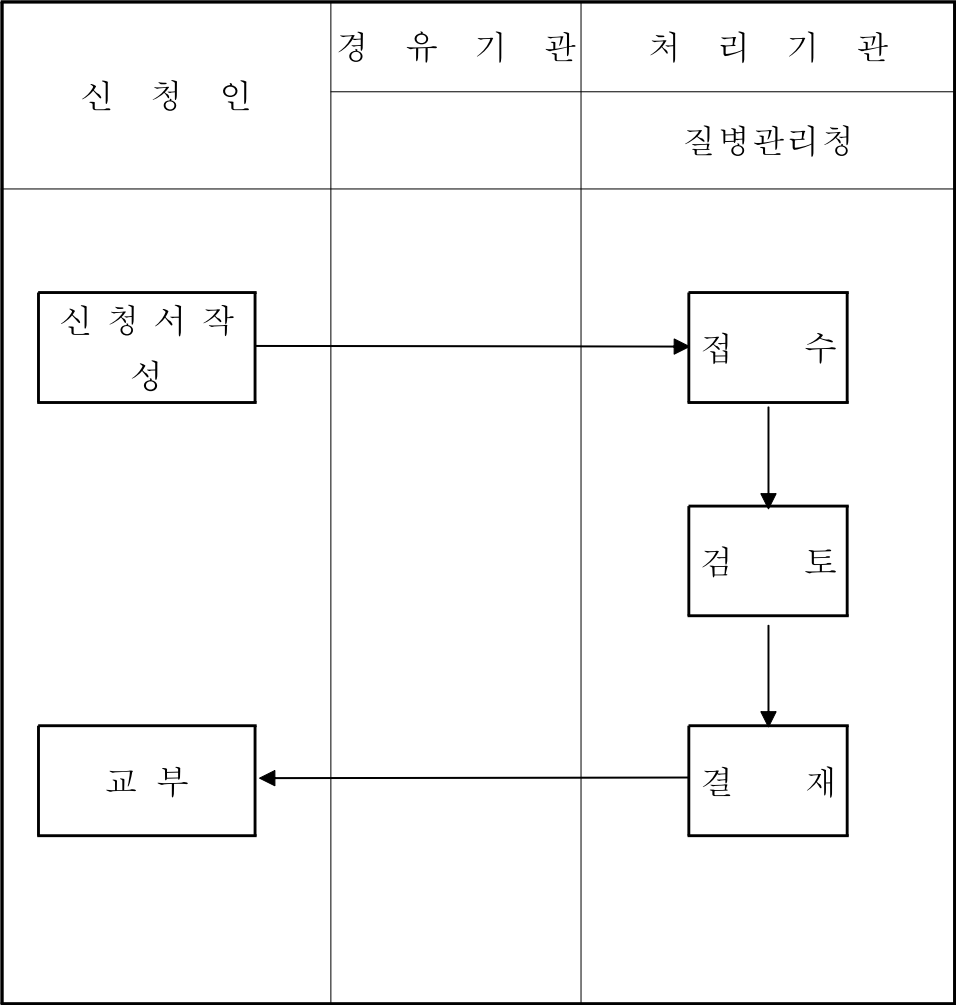
처리절차	접 수 처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처리부서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처리기간	등록 : 45일 변경 : 30일	수수료	-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 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 검 사 기 관 ☐ 측 정 기 관				등록 (변경) 신 청 서		처리기간 등록 45일 변경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신 청 기 관	③기관명			④전화번호			
				⑤FAX번호			
	⑥주소			⑦기술책임자성명			
				⑧기술책임자 생년월일			
⑨검사 측정 분야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질 병 관 리 청 장 귀 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검사기관) 2.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검사기관) 3.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피폭방사선량관독업무자등록증 1부(측정기관) 4.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측정기관) 5. 공통사항 가.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나.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다.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라.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 보유목록 1부 마.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 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 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아.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등록증 원본. 2.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 자료 1부.							
기재상 주의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대표자 서약서

기 관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본 기관은 질병관리청에 검사 또는 측정기관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관련 규정을 항상 준수하고 관련 규정 문서에 대한 최신본을 구비하며, 평가, 사후관리, 재평가 및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 기관은 등록을 승인받은 활동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검사·측정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검사 또는 측정 업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기관은 검사 또는 측정기관 등록증을 오용하거나 잘못된 성적서를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5.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속하게 등록증을 반납하고, 등록과 관련된 홍보물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6. 본 기관은 검사 또는 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본 기관이 이행해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본 검사기관은 이해관련 업체로부터 임직원 및 검사기관이 독립검사기관으로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향후에도 독립검사기관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인 력 현 황

○ 대표자 및 임원

성 명	직 위	상근 여부	입사년도 (전입)	전화번호 E-mail	비고

○ 기술책임자

성 명	직 위 (정, 부)	최종학력	입사년도 (전 입)	전화번호 E-mail	비고

○ 품질책임자

성 명	직 위 (정, 부)	최종학력	입사년도 (전입)	전화번호 E-mail	비고

○ 팀장급 검사요원 및 검사요원 또는 상용종사자

성 명	직 위	담 당 업무명	최종학력	입사년도 (전입)	자격증	비고

※ 검사 또는 측정기관의 모든 임직원의 이력 및 경력사항(근무 및 교육이수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상근 임직원이 이해관련 업체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검사·측정기관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기관	분 야	시 설	기 준 장 비	검 사 장 비
검사 기관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1.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 비의 관리실 2. 기준장비와 검사장비 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5m×3m이상) 3. 기준장비와 검사장비 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 및 방사선 차폐시설 4. 품질관리를 위한 X- 선발생장치 5.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 비의 관리실의 적절한 환 경설비(온습도기록계 비 치 등)	1. 외장누설전류계 2. 조사선량(율) 측정기 3. 관전압측정기 4. 관전류측정기 5. 조사시간측정기 6. 조도계 7. mAs 측정기	1. 외장누설전류계 (1,000±10Ω, 0.15±0.075μF) 2. 조사선량(율)측정기 3. 관전압측정기 4. 관전류측정기 5. 조사시간측정기 6. 조도계 7. mAs 측정기 8. 단층두께측정용 팬텀 9. 전산화단층촬영장치팬텀(전신, 두부) 10.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선량측정용 팬텀(전신, 두부) 11. 스토리지형 오실로스코프 12. 멀티미터 13. 알루미늄 감약벽돌(20×20×3.8cm) 또는 (20×20×1.9cm)×2 14. 표준유방팬텀 15. 1인치 두께의 아크릴시트 (카세트 크기보다 큰 것) 16. 유방촬영용 조사선량 측정기 17. 알루미늄 시트(반가층 측정용) 18. 분해능 및 감도 측정기
	방사선방어시설		1. 누설선량측정용 조사선량(율)계 2. 1차선측정용 조사선량(율)계	1. 누설선량측정용 조사선량(율)계 2. 1차선측정용 조사선량(율)계 3. 워터 팬텀(water phantom) ① (30×30×30cm) ② (20×20×20cm) 4. 전산화단층촬영장치팬텀(전신) 5. 표준유방팬텀 6. 줄자 7. 온도계 8. 기압계
측정 기관	필름배지	1. 선량계교정시설 2. 자동화된 필름 현상실 3. 자동화된 필름 농도측정시설 4. 필름보관시설 5. 환경설비(온습도기록계 비치)	1. 필름현상탱크 2. 필름흑화도(농도)측정기 3. 필름건조기 4. 표식장치	
	티·엘배지 등	1. 선량계교정시설 2. 측정시설 3. 환경설비(온습도기록계 비치)	1. 판독기 2. 부판독기 3. 재생처리장비 및 기록장비	
* 측정기관의 시설 중 선량계교정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 등록을 한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분야에 따른 시험장비 구비기준 1)진단용엑스선장치: 검사장비중 9, 10 및 14 내지 17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2)진단용엑스선발생기: 검사장비중 8 내지 10 및 14 내지 17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3)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기준장비중 6 및 7의 장비와 검사장비중 6 내지 10 및 13 내지 17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4)유방촬영용장치: 검사장비중 9 및 10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5)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기준장비중 1 및 4 내지 6의 장비 및 검사장비중 1, 4, 5, 6, 8과 13 내지 17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6) 기준장비와 동일한 검사장비를 모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장비를 검사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험장비 정도관리기준(제11조 관련)

기 관 별	기 준 장 비	검 사 장 비
검사기관	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기준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을 마련하여 온도, 습도, 전원, 조명 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하고 검사용장비와의 정도관리 비교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기준장비의 이력부; 기준장비는 검사 등의 장비별로 교정 및 수리에 관한 기준기 이력부가 비치되어야 하며 이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①기기재원 및 특성(기기명, 제작회사, 형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측정가능범위 및 정확도 등) ②기기이력 ③교정일자 및 차기교정일자 ④교정내용 및 교정기관 ⑤수리에 관한 내역 ⑥관리사항(사용일지, 정도관리사항 등) 3. 주기적 교정: 1)기준장비는 교정유효기간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교정기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기준장비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취급부주의, 수리 등)가 발생시는 교정주기에 관계없이 즉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3)사용중 정밀도가 기준치를 유지치 못할 경우에는 주기에 관계없이 재교정을 받아야 한다.	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검사용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을 마련하여 온도, 습도 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장비를 쉽게 식별 또는 구분이 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검사장비의 이력부; 검사장비별로 교정 및 수리에 관한 검사장비 이력부가 비치되어야 하며 이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①기기재원 및 특성(기기명, 제작회사, 형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측정가능범위 및 정확도 등) ②기기이력 ③기준장비와의 비교측정일자 및 차기비교측정일자 ④비교측정내용 ⑤수리에 관한 내역 ⑥관리사항(사용일지) 2)기준장비와의 주기적 비교측정을 위하여 기술한 비교측정절차서 3. 주기적 교정: 1)검사용 장비는 분기별 1회이상 기준장비와 상호비교 측정하여 기준장비와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장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검사용 장비는 국가교정기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검사장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취급부주의, 수리 등)가 발생시는 자체 교정주기에 관계없이 즉시 기준기와 비교측정을 받아야 한다. 3)사용중 검사장비의 전체오차가 검사기준으로 규정되어있는 허용오차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주기에 관계없이 기준기와 비교측정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를 위한 X-선발생장치의 정도관리 1) 정도관리 이력부 : 분기별 1회 정도관리 2) 년1회 장치검사 실시하여 성적서 구비	
측정기관	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측정장비는 별도의 기기실을 마련하여 온도, 습도, 전원, 조명 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측정장비의 이력부; 측정장비별로 교정 및 수리에 관한 장비의 이력부가 비치되어야 하며 이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①기기재원 및 특성(기기명, 제작회사, 형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측정가능범위 및 정확도 등) ②기기이력 ③교정내용 및 성능시험내역 ④수리에 관한 내역 ⑤관리사항(사용일지, 성능관리사항등) 3. 주기적 교정: 판독 및 선량보증절차서에 따라 측정장비의 교정과 전체 측정업무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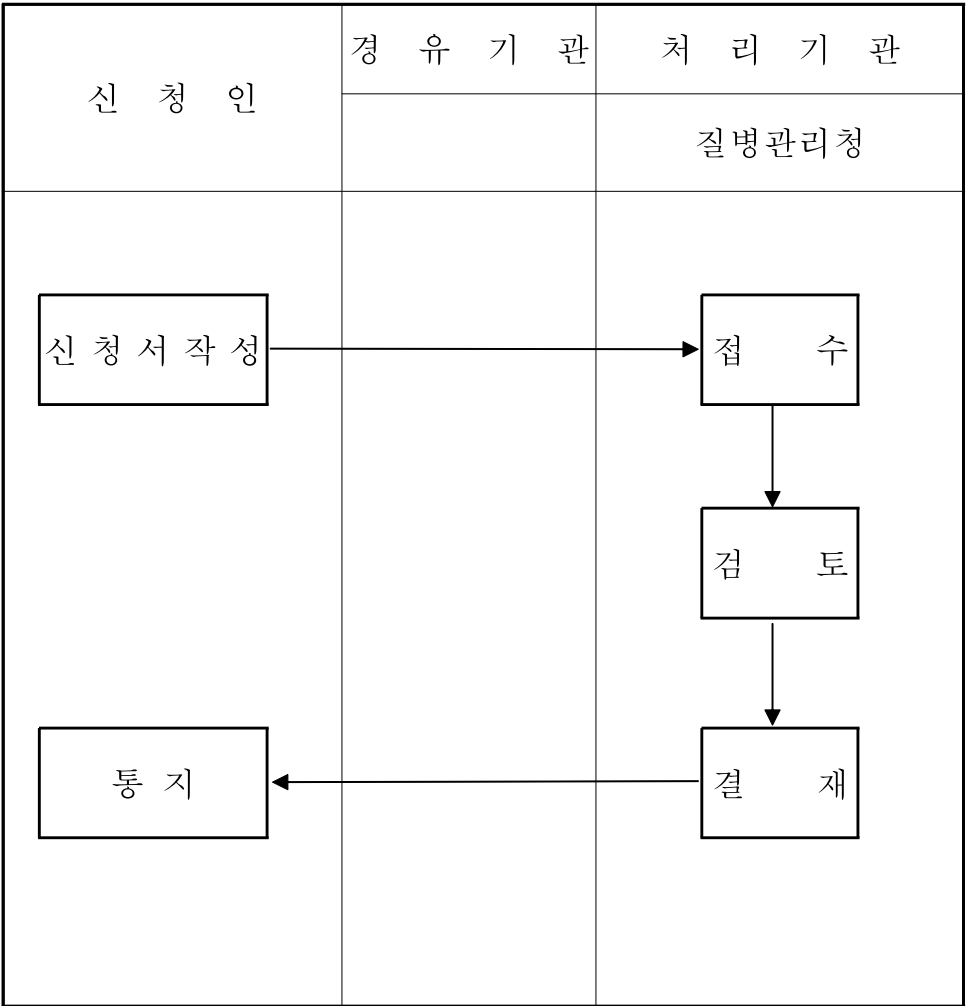
민원명	12.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소관부서	의료방사선 건강관리과
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업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4호] 검사·측정기관(휴업,폐업) 신고서 2. 검사·측정기관 등록증(원본)			
처리절차	접수처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처리부서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참고사항				

☐ 휴 업 ☐ 폐 업 검사·측정기관 신고서			처리기간
			7일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휴·폐 업 사 유			
휴업의 경우, 그 기 간			
상기 사유로 인하여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휴 업 ☐ 폐 업 검사·측정기관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측정기관 등록증 (원본) 1부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명	13.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신청		소관부서	의료방사선 건강관리과
내용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열람 및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5호]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서 2. [별지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처리절차	접수처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처리부서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0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로 대체
	주 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의료기관명						
사용목적							
확인 내용		개인피폭선량 기록					
기록확인기간		기 간				의 료 기 관 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정보 수집 · 이용 기관명 : 질병관리청

2. 정보 수집 · 이용 범위와 사용목적

- 수집 · 이용 범위 : 주민등록번호
- 사용목적 : ①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②선량한도초과자 조사 등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자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확인(서명)
본 인		-	(서명)

상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귀하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날인이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민원명	14. 검체시험의뢰		소관부서	신중병원체분석과
내용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실험실 진단을 수행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민원인 구비서류	1. [별지제7호] 검체 시험의뢰서 2. 검사대상물 3. 그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처리절차	접수처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각 부서	처리부서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각 부서
	처리기간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3~58일)	수수료	-
	처리요건	민원인 제출서류		
	후속민원	없음		
	처리과정	접수 → 시험·검사→ 결재 → 성적서 발급		
참고사항				

() 검체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 접수 ➔ 시험·검사 ➔ 결제 ➔ 성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청(담당부서)					